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글·사진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 경실련 재벌개혁 홍보 부스의 모습

지난 6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이하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시민이 함께 모여 재벌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광장에는 재벌개혁이나 을들의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다양한 홍보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제화 노동자 노조 권리 보장 대책위원회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였다. 높은 백화점 수수료로 인해 제화 노동자들의 걱정한 임금이 지켜지지 못하는

부분을 알리려 하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홍보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는 재벌보험사 암보험금 미지급 횡포를 알리고 이러한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하였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재벌보험사와 싸우기까지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와 현대중공업 분할 반대를 주장하였다. 조선산업구조조정 등의 의미라기보다 재벌 세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 지부는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용진 OUT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집중력 해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시민들에게 재벌이란 문어발식 확장성과 족벌성, 거대 자본성 등을 본질로 하는 총수(동일인)가 있는 계열회사들(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로, 이로 인해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황제경영, 수직계열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재벌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은산분리 강화, 불법 경영승계 근절, 지주회사 체제 유도, 기업단위 지정 출자단계 제한, 수직계열화 억제 등이 시급함을 홍보하였다.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재벌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도 홍보했다. 그동안 정치는 재벌개혁에 실

패했고,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거대 정당들이 별반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민공동회 참여 단체들의 부스 홍보와 함께 이어진 주요 행사는 시민들이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알고 개혁의 시급성을 공감하는 원탁회의였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한국 재벌들은 통제되지 않는 경제권력을 이용해 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고, 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며, 재벌체제 개혁의 시급성을 알렸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사익 추구 등을 언급하며 “재벌개혁을 통해 한국 사회·경제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자구조 제한을 통한 경제력 집중 해소, 구조적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단체협약 권리 보장 등을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2의 촛불 시민운동과 같은 개혁 연대를 통해 재벌개혁과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에 만민공동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픈채팅창에서 질문과 응답이 오가기도 했다. “2018년 기준 4대 재벌 총수의 평균 그룹 소유 지분은 약 몇 %일까요?”라는 질문에 1~10%(145명), 1% 이하(39명), 10~20%(38명) 순으로 응답했다. 참여자들은 4대 총수의 평균 그룹 소유 지분이 평균 0.8%에 지나지 않는다는 정답을 듣고 놀라워하기도 하였다. 재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 원탁토론 기초발표 중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1위로 정경유착(146명), 2위 사내유보금 950조 원(98명), 3위 노동 착취(87명), 4위 갑질(79명), 5위 불공정거래(76명) 등을 선택했다. 재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1위 노동 탄압을 통한 이윤 축적(135명), 2위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107명), 3위 불법 경영 승계(75명), 4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71명), 5위 불공정거래(62명)가 꼽혔다.

이어진 토론은 ‘재벌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제로 진행됐다. 원탁회의에서 재벌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정경유착,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 경제력 집중, 재벌 갑질, 정치개혁 등이었다. 전관예우 근절, 재벌 감시 공공기관 설립, 금융감독원 정상화, 재벌개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도 언급되었다.

6월 초여름 햇볕 아래서 더위를 견뎌야 하기도 했지만,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투박한 듯 거친 생각과 발언들도 있었으나, 약자로서 일어서 재벌과 갑들의 갑질에 당한 설움에서 비롯된 절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구조개혁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중소 벤처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부동산 거품의 제거, 소득 및 자산 격차 완화 등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은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제2의 촛불시민운동의 매서운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중단해야

글·사진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ok@ccej.or.kr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1월부터 시행되어 7개월이 지났다. 정부와 여당은 법안 논의 당시 반대하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었는지, 토론이나 공청

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법을 통과시켰다. 더군다나 은산분리와 핀테크산업 발전과의 관계, 고용 창출 효과, 증금리 대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제정되었음에

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대주주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주주적격성 기준 완화를 위해 머리 맞댄 당정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지분 확대를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심사 중단, 키움과 토스뱅크의 예비인가 탈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현행 특례법은 은행법상의 산업자본의 최대지분보유 비율인 10%를 넘어서, 최대 34%까지 확대가 가능하지만,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

을 정해놓았다.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요청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이 요건에 걸려있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케이티가 2016년 지하철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카카오뱅크 역시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누락으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물론 김범수 의장의 경우 불복에 따른 재판 진행으로 5월 14일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났으나, 검찰의 항소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실적 또한 저조하여, 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주주자격요건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결국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산업자본 대주주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마저 완화하려는 것이다.



● 6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은산분리 훼손 저지에서 대주주자격 요건 완화 대응으로

2018년 하반기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훼손을 막기 위해 연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 집회, 토론회, 국회 의견서 제출 등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제는 대주주자격요건 완화 저지를 위해 또다시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규제 완화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실련은 당정협의회 개최 이후, 6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은산분리 훼손 때 같이 연대했던 시민사회와 금융노조, 국회의원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산업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할 수 없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 등과 달라야 할 이유 역시 전혀 없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를 점검할 때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따라서 대주주자격요건 완화나 또 다른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2년에 대한 평가가 급선무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7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진입자를 못 만들어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여전히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어떠한 혁신이 일어났는지,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 최대 주주에 법 위반자를 앉혀 리스크를 키울 필요는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원칙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



춧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글·그림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땅값과 건물값의 합인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과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지만 아파트 역시 공시지가가 존재한다. 이미 월간경실련 원고를 열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인 표

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해 산정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을 책정하면 개별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산식 등을 이용해 3,300여만 개별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모든 개별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고, 국

토부가 매년 수천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조사·결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조작돼 책정되면서 전국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왔다. 경실련 조사 결과 시세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고 오히려 후퇴됐다.

서울 표준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으며, 작년 수준(68%)이라던 공동주택은 오히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인해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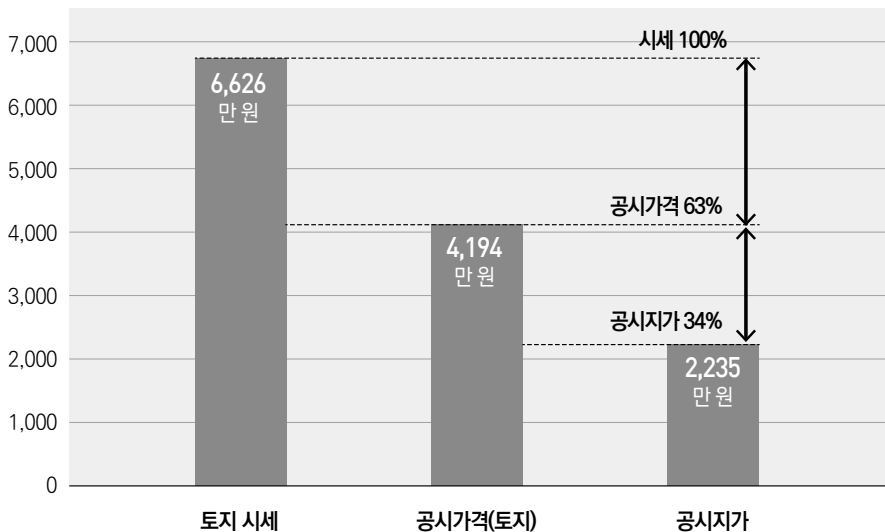
불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실제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이고, 표준단독주택은 '18년 51.8%에서 '19년 53%로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단독주택·토지보다 높게 책정되어 유형 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세 상승률 정도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에서 표준지 위치한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나마

아파트 토지 면적당 토지시세·공시가격·공시지가 비교(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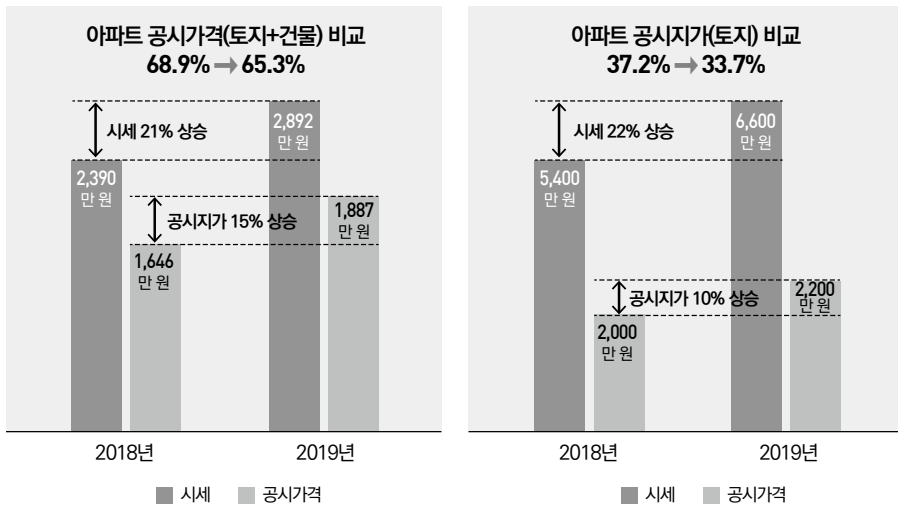
주) 공시가격(토지):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건축비(국세청 기준시가)를 제한 후 용적률을 적용한 토지 면적당 공시가격

시세의 70% 수준이던 공동주택도 시세반영률이 떨어졌으며, 상승했다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표준지공시지가도 4%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4.8%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25개의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시세는 6,600만 원으로 조사됐으나 정부 발표 공시지가는 평균 평당 2,200만 원에 불과했다. 토지 시세는 각 아파트의 시세에서 준공 시점에 따라 건물 가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도 2배가 차이 났다.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땅값)는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중 땅값의 절반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중 땅값은 4,194만 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2,235만 원에 불과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땅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개념으로 공시가격에서 정부가 정한 건물값(국세청 기준시가)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땅값을 산출했다. 25개 단지의 평균 평당 토지 시세(6,600만 원)와 비교하면 공시가격 기준 땅값은 시세의 63%이고, 공시지가는 34%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을 모두 표준지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2005년에 공시가격을 도입한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

표준지 아파트 공시가격, 공시지가 변화 비교



자료) 시세: kb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8.9%→65.3%,
2018년 대비 3.6% 하락**

한편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시세반영률과 같은 68.1%라고 밝혔으나 조사 결과 시세반영률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5개 표준지 아파트 중 22개 단지는 시세반영률이 낮아졌고, 3개 아파트(강남 삼풍, 상계 주공 3, 고덕리 2단지)만 상승했다. 이마저도 1~2%에 불과하다.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390만 원에서 2,892만 원으로 21% 상승했고, 공시가격은 1,646만 원에서 1,887만 원으로 평균 15% 올랐으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8년 68.9%에서 2019년 65.3%로 3.6% 낮아졌다.

이처럼 정부의 공시가격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종류별 큰 조세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해야 하는 국토부도, 그간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할 감사원도 의지가 없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 2월 경실련이 감사 청구한 공시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공익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적정성 여부는 감사하지 않고, 표준지 및 표준 주택의 절차적 정당성,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만 감사할 계획이다.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공시가 축소로 인한 세금 징수 방해와 70조 원 규모를 징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축소 부실 감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 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 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 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 원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개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본 대로 실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물론 이런 불평등이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촛불 혁명과 적폐 타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대감으로 탄생한 정부마저 이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진일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지율이 높던 정권 초기에 개혁의 기회를 놓쳤다.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



무주택 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글·사진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seongdal@ccej.or.kr



● 5월 14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판교 10년 임대주택 주민들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에게 희망은커녕 고통과 분노만 안겨주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입주민들은 연일 광장집회를 개최하며 무주택 서민을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정책을 성토하고 있고, 인허가 기관인 국토부 장관과 성남시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

도 이어지고 있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 임대주택 150만 호 계획(국민임대 100만 호, 10년 임대 50만 호)으로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는 2006년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표〉 입주자 모집 시 공개된 판교 10년 임대아파트 최초 주택가격

아파트명	위치	공급면적 (평)	억원/호	만원/평			비고
				계	토지비	건축비	
산운마을11	운중동	25	1.8억	710	280	430	토지비는 조성원가의 60~85% 건축비는 표준건축비+α
산운마을12	운중동	23	1.6억	690	280	410	
붓돌마을3	삼평동	30	2.5억	820	380	440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수많은 무주택청약자들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판교에만 6천여 세대가 공급됐다.

입주자모집 시 제시된 주택가격은 25평 기준 1억 8천만 원으로 평당 710만 원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LH공사, 성남시, 민간사업자 등은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액으로 분양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며, 시세 적용 시 분양 전환가는 3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론에는 민간 주택업자가 제시한 분양 전환가격이 전용 85㎡ 아파트 기준 8억 원(평당 2,400만 원)대로 보도되기도 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주민들에게 주변시세가 올랐으니 최초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을 전환한다면, 과도한 시세차익 수혜에 대한 비판, 기분양자들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관련법 위반이며 국민을 속이고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집을 장사해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 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 이

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전환 가격이 감정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분양전환 시 주변 시세 하락과 건축물의 감가상각에 의해 감정가액이 산정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

판교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인의 논밭 임야를 수용 후 개발한 땅이다. 평균 수용가는 평당 93만 원이며,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사와 민간업자가 제시한 최초 주택 가격은 평당 700~740만 원이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제시한 산정기준대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평당 340만 원), 택지공급가(평당 300만 원), 택지비 이자(정기예금 금리 평균 4% 적용 시 10년 기준 약 120만 원)를 합치더라도 최초 주택 가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남시와 공기업, 민간사업자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관련 법과 달리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규정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계약할 때는 관련법에 어긋난 입주자모집 공고 안에 따른다는 규정으로 입주민들과 계약했다. 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개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분양전환가격을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 7월 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주택공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산정한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 평가금액의 산술평균(민간사업자)”이라고 명시하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안의 분양전환 규정이 이미 관련 법을 왜곡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를 따른다는 임대차 계약서가 결코 공정할 수 없다.

설령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시세 기준의 감정평가 방식은 맞지 않다. 오히려 신도시와 택지를 개발한 목적과 택촉법 제정 취지인 '서민주거안정'을 고려한다면 택지는 옹당 시세 기준 감정평가가 아니라 '원가 기준' 감정평가 방식이 타당하다.

이처럼 관련 법을 왜곡하고 입주자를 속여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임대차 계약 및 입주자 모집공고 중 분양전환

가격 관련 조항은 입주민들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계약사항이므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7월 1일 관련법을 위반하고 무주택 서민을 기만한 불공정 계약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하며, 세부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 수정을 조속히 무효처리하여 무주택 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 검찰도 무주택 서민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라의 주인들을 우롱한 국토부, 성남시 공기업, 민간주택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이나 부패, 비리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경실련 창립 30주년

1989. 7. 8. 경실련 발기인대회

1989. 11. 4. 경실련 창립

1989년 7월 8일 명동 YMCA 강당에서
경실련의 발기인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나 2019년 7월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경제정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글·사진 서휘원 정책실 간사 hwseo@ccej.or.kr



경실련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 재산 공개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축소 신고를 눈감아주는 축소신고제도’이다. 최근 경실

련의 분석 결과, 고위공직자 대부분이 그들의 부동산 재산을 공시지가·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실거래가(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공직자들의 재산신고가 투명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해야 할 인사혁신처가 오히려 최초 공직자에 한해서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토록 하는 등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가로막고 있음도 드러났다.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원칙 없는 반쪽짜리 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로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공개 재산, 시세의 절반밖에 안 돼

지난 7월 5일, 경실련은 부동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토부와 부동산 재산 신고·공개 제도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했다.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것은 우리나라 재산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및 산하 기관’ 1급 이상 30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21억 5,981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1,374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7.7%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의 1급 이상의 공무원 7명의 경우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10억 2,040만 원이었으나, 시세는 19억 5,92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9억 3,888만 원으로, 신고가액은 시세의 52.1%에 불과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도 신고기준 73%였지만, 시세 기준은 83%였다.

1993년에도 문제시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

1993년 2월 27일 김영삼 대통령이 자진하여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며, 당정 고위 인사에 대한 재산공개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1993년 3월 18일에는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이, 3월 22일에는 민자당 의원과 당무위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공개 과정에서 고위 인사들의 도덕성 및 공개된 재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적지 않은 수의 공직자들이 재산 관련 비리 의혹에 휩싸였으며, 상당수의 공직자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적은 공시지가나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액을 고의로 낮추어 공개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또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무연고지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가족 명의의 부동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번졌다.

당시 <경실련> 유종성 정책실장은 “재산공개가 원칙도 없고 감사원의 실사도 거치지 않아 반쪽공개라는 느낌이 들고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라며, 신고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재산공개는 단순한 공개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공정한 실사를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93년 3월 19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사 없는 공개 시민 의문).

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변화 과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1993. 06. 11. / 시행 1993. 07. 12.

-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4급)와 재산등록기관 확대, 심사 강화
-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의 등록재산공개 의무화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1.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2.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2006. 12. 28. / 시행 2007. 06. 29.

- 부동산 및 골프 회원권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신고(실거래가 기준)
- 고지거부제도를 약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지거부제도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록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 등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함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③ 제1항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2006. 12. 28. / 시행 2007. 06. 29.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공포·2007. 6. 29.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재산신고 기준 관련

제4조 ④ 제4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이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는 보상액을 말한다. <신설 2007. 6. 2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 2018.07.02.

- 재산 등록의무자가 부동산, 골프 회원권 등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에는 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도록 함

* 부동산 재산신고 관련

제4조2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 자목(골프 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 산정 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가 눈감아주고 있는 부동산 재산 축소공개

김영삼 대통령의 자진 재산공개 이후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19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에는 재산공개 제도화와 공직자윤리위에 재산심사권 부여 등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4급 이상 등록 및 1급 이상 공개 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실련이 주장했던 6급 이상 등록 및 3급 이상 공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 심사권 등의 내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2005년에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 발표하며 재산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부동산 재산의 실거래가 기준 신고,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후 200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화 및 실거래가 공개가 이루어졌고, 같은 해 12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기준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공개로 바뀌었

다. 하지만 이후에도 많은 고위공직자가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나갔다.

결국,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본격화 이후 지금까지 재산축소 공개가 계속되어온 셈이다. 김영삼 정부 시기를 재연하듯,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언론 보도로 공직자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제야 행안부는 2018년 6월 시행령을 개정,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감독하고 심사해야 할 인사혁신처는 오히려 재산의 영속성 우려를 들먹이며, 조문에도 없는 시행령 제·개정 이유와 브리핑 자료에 '최초 신고자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또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가가 아니다'라는 법취지에 위배 되는 해석으로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신고를 정당화시켰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관련 법과 달리 실거래가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부동산 재산 축소공개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당장 불공정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고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철저히 심사함으로써 정확한 재산공개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축재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

다. △재산등록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제4조 등록재산 가액 산정방법),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재산 은닉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제12조 성실등록 의무). 불공정한 공시가격 개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 개정 없이도 국토부와 인사혁신처의 의지만 있으면 실거래가 기준 신고가 가능해지고 정확한 재산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공시가격 혹은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에 따라 기존의 공직자들도 신고하도록 소급 적용하면 된다. ☺☺



북미 중재자 역할은 내려놓고 남북관계 복원에 힘써야

글·사진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남·북·미 정상이 만남을 가졌으며, 미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 땅을 밟았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로 어려움을 겪었지

만, 이번 만남을 통해 북미 관계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DMZ에서 만나자'는 한 줄의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한편의 쇼로 넘어갈 뻔했던 만남이 53분의 대화로

이어졌으며, 당장 북미는 2~3주 내 협상 실무진을 구성해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북미는 서로 간의 신뢰 부족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를 노출했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에서의 극적인 만남으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으며, 하노이 노딜 이후 지지부진했던 북미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북미 관계는 여전히 탐다운 방식이 유효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한 해법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될 북미 실무회담에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 등을 언급하며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는 상황이다. 북한 또한 체제 보장을 필두로 추가적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와 '단계적'이라는 입장 차이도 쉽지 않은 문제다.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비핵화에 속도를 내야 하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소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 모두 기존의 주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단계에서 제재 완화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북미 정상을 다시금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것에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매우 컸다.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평화를 구걸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상황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하지만 이제 중재자 역할은 잠시 내려놓고 진전된 남북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중재자 역할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대화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전 남북간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속히 재개에 나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험 재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정세를 잘 활용하고, 애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두 축이 안정적으로 이끌어져 나갈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이 우선인 상황이지만 북미 관계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서의 CVID(완벽하며,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이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럴 때만이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 적극 나서라!

글·사진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ohoh@ccej.or.kr





● 5월 22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약속하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창하였다. 그 실천의 주요 지표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이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고, 노동기본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국회의 관계 법령 개정 방식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했다. 더욱이 ILO 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의와 힘의 대결 등이 혼재하면서 더 지지부진했다. ILO 100주년 기념을 즈음하여 극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기도 했지만,

결국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올해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철폐 분야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

다른 부차적인 논쟁을 넘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담아낼 지향에 집중해야 한다. 핵심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이 갖는 노동기본권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상징성이다. 노사의 극단적 대립과 소모적 법리논쟁으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라는 지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비준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몇몇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사회 일반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의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유보된 것은 국내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방증



● 6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노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다. 비준을 계기로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법률 제·개정 역시 입법부의 역할이 큰 만큼 능동적인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그 의미가 국내로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한-EU FTA에 근거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한바 있다.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비준 동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늦추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협약의 비준을 통해 상식과 원칙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각종 노동 행정지침 등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비준에 동의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의 적정 노동시간 쟁취를 위해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절이 올해로 제129회를 맞았다. 그러나 130년 전의 노동자들이 바라던 사회는 여전히 요원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과 단결 자유에 대한 외침이 오늘도 유효한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한 단계 진보한 노동환경 개선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실련과 함께 걷는 길

[회원가입] (FAX) 02-741-8565 (e-mail) member@ccej.or.kr
 [전화문의] 회원팀 02-766-5627

회원정보

회비와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단체 및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원하시면 주민번호 기재)

연락처

이메일

주소 (우편물 수령지)

가입동기

- 추천 (추천인:)
 토론회, 행사 (행사명:)
 인터넷, SNS 기타 ()

회비납부 방식

(CMS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중 택1)

CMS 계좌이체

신용카드

예금주

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 불가)

카드번호

출금은행

유효기간

월/ 년(숫자4자리)

생년월일

출금일

- 10일 20일 25일

월납부금액

개인

-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원

법인

- (매월) 5만원 10만원 기타()원
 (일시) 60만원 120만원 기타()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회비 수납
- 수집항목(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 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자필 필수)

증액 신청서

경실련 회원님, 회비를 증액해 주세요!

이름

소속

회비증액 현 회비에서 ()원 증액합니다.

정보갱신 (변동사항 있는 경우만)

연락처

E-mail

주 소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일

20 년 월 일